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 발급의무 등

제117조의2 연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발급의무 등



제117조의 요약

- 사업자 아닌 소비자(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공급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은 신용카드가맹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맹점가입지도 가능함.
- 가입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가맹점가입안하면 세무상 불이익(세무조사 등)있을 수 있으며 가맹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5%)가 적용됨. 단, 대규모 점포·체육시설운영업자가 동일 시설의 다른 매출에 대해 합산발급은 가능함.

●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 발급의무 등]

-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국제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1. 신용카드가맹점 등 가입대상자 지정

① 최종소비자거래 사업자 지정

◎ 이유·목적 : 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 투명사회유도, 사업자의 제반 지출·증빙·구비유도

◎ 가입대상자 : 주로 사업자 아닌 소비자(최종 소비자임)에게 재화·용역공급하는 법인

◎ 주요 가입대상업종 : 소매업법인, 숙박업·음식점업법인,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용역공급법인(부동산중개업, 전문자격사, 병의원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별표 3의2] (2010. 6. 8 개정)

소비자상대업종 (제210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업 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스 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집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전문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장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 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약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

	비사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음식점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 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신용카드 사용 · 발행 의무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대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발급거부금액 등×5%)가 적용된다. 또한 소비자는 국세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거부 신고자성명,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등 거래내용을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④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2010. 2. 18 개정)

1. 신고자 성명 (2009. 2. 4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 · 거래내용 및 금액 (2009. 2. 4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합산 발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또는 판매 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신용카드가맹점지정 절차 등

납세관리목적상 계속 지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⑥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참고>

☒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제정 1990. 6. 25 국세청고시 제 90-16호

개정 1998. 6. 8. 국세청고시 제1998-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8. 6. 8 국세청장

1.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3.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4.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6.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중 개인 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별표양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주점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부 칙 (1998. 6. 8 국세청고시 제1998-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117조의2의 요약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요건 해당시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함. 단, 항공운송업 등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법인 :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서 소매, 음식·숙박 및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학원·의료법인 등으로서 주로 최종일반소비자와 거래하는 법인이 해당함.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으로 함.
- 불이행시 현금영수증가맹 및 발급불성실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 당함.

●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

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법인 지정

①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와 투명거래 유도를 위해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가입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주요 가입대상업종은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교부업자, 즉 소매, 음식·숙박 및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의료법인(약국 포함), 학원업 등이 해당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② 3개월 이내에 가입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이 미가입시에는 현금영수증가맹불성실가산세(법 제76조제12항)로 수입금액×0.5%의 가산세 건당 5,000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금액×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④ 건당 1원 이상시 발급대상임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거래건당 1원 이상이면 발급대상이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항공운송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II.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법 제76조제12항)가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은 국세청장 등에게 발급거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에 관해서는 제15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2010. 2. 18 개정)

<참고>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전문 개정 2008. 12. 29 국세청고시 제2008-44호

개정 2009. 6. 5 국세청고시 제2009-1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 6. 5 국세청장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성명 · 사업장소재지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봉사료 · 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회원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이동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

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보관하고 1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제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익일 오전 4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예비(31바이트)

제4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제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제청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번호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제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 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9.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